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(김은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0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6. 4.

발의의원 : 김은영 의원,  
신동윤 의원, 곽동환 의원

## 1. 제정이유

국가유공자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 및 관내 공공시설의 주차 구역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구역의 설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지역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 (안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 (안 제3조)
- 다. 적용 범위 (안 제4조)
- 라.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 등 (안 제5~6조)
- 마.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(안 제7조)
- 바. 우선주차구역 위반차량의 조치 (안 제8조)
- 사. 상이등급 판정자에 관한 특례 (안 제9조)

## 3. 제정 조례(안) : “붙임”

## 4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기본법」, 「주차장법」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(이하 ‘우선주차구역’ 이라 한다)” 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.

제4조(적용 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.

1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

자 본인

3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
4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
5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
6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 본인
7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

**제5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)**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, 직속기관, 읍·면 및 읍·면 출장소의 청사
2.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·관리하는 공공시설

**제6조(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등)**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
1.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. 다만,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  2.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,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.
- 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, 누

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.

**제7조(우선주차구역의 이용)** 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.

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.

**제8조(우선주차구역의 위반차량 조치)**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**제9조(상이등급 판정자에 관한 특례)** 제4조에도 불구하고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1041호(2012.07.01. 시행)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(제6조관련)

1. 도안

가. 바닥면



나. 안내표지판 도안



□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(2023.3.4., 타법개정, 2023.6.5. 시행)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□ 「주차장법」 (2023. 8. 16., 일부개정, 2024.2.17. 시행)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7. “주차단위구획”이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말한다.